

21. 2차 해사법규

부산 포세이돈 해양경찰학원 김대근

1.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 ③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 ④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1번 해설] ②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2. 다음 <보기>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정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 “계선”이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 ㉢ 예인선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 ㉣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번 해설] ②

- ㉠ [X] 정박
- ㉡ [X] 계류
- ㉢ [O]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 ㉣ [X]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흡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 ㉤ [O]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보기>에서 「해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 ㉡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 ㉣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 ㉤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 ㉥ 선내 비상훈련 실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번 해설] ③

㉠㉡㉢㉣㉤ (O)

㉥ (X) 선장의 직무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4. 다음 <보기>에서 「항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㉔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㉕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 ㉖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번 해설] ②

- ㉗㉘㉙ 지원시설
- ㉚㉛㉜ 기능시설
- ㉝ 기본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 ②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 ③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 ④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5번 해설] ①

①은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②③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다음 <보기>는 「도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3급 도선사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 ㉡ 「도선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 ㉢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 이 중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2개 항이다.
- ㉣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번 해설] ②

㉠ [X]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급 도선사: 모든 선박
-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7만톤 이하인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가. 총톤수 3만톤 이하인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총톤수 3만톤인 위험화물운반선

7. 다음 <보기>는 「선박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6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선박원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번 해설] ③

㉢ [X] 60일간 → 90일간

8. 다음 <보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년으로 한다.
- ㉡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17.5㎡일 때 유선의 승선 정원 은 ()명이다.
- ㉢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선박은 길이 ()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 ① 119 ② 127 ③ 134 ④ 139

[8번 해설] ④

10 + 5 + 50 + 24 + 50 = 139

9.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출항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태풍주의보·경보 시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포함)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풍랑·폭풍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9번 해설]

- ③ [X]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포함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제외

10.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해리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10번 해설] ④

- ④ 1해리 → 1킬로미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다음 <보기>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 전까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 7일 ㉡ 해양수산부장관
- ② ㉠ 14일 ㉡ 해양수산부장관
- ③ ㉠ 14일 ㉡ 해양경찰청장
- ④ ㉠ 7일 ㉡ 해양경찰청장

[11번 해설] ④

선박해체신고는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 해양사고
- ② ㉠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 조난사고
- ③ ㉠ 수난대비 및 구호 ㉡ 조난사고
- ④ ㉠ 수난대비 및 구호 ㉡ 해양사고

[12번 해설] ②

13. 다음 <보기>는 「선원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 10 ㉡ 4분의 1, 12시간
- ② ㉠ 14 ㉡ 2분의 1, 24시간
- ③ ㉠ 10 ㉡ 4분의 1, 24시간
- ④ ㉠ 14 ㉡ 2분의 1, 12시간

[13번 해설] ③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선내비상훈련)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다음 <보기>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좌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번 해설] ①

㉠ [X]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 [X] 0.5해리 → 0.5킬로미터

㉢ [X] 좌현 → 우현

㉣㉤ (O)

15. 다음 <보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 ㉢ 중앙심판원장은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명 이내로 한다.

- ① 27 ② 30 ③ 38 ④ 49

[15번 해설] ③

3 + 5 + 10 + 20 = 38

16.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① ㉠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해양경찰서장
- ② ㉠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 ③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해양경찰서장
- ④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16번 해설]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항해구역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평수구역, 내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 ②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 ③ 평수구역, 연안구역, 내해구역, 원해구역
- ④ 평수구역, 내수구역, 근해구역, 원해구역

[17번 해설]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18.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② "만재흡수선"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흡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 ③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 ④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8번 해설] ④

④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 →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19. 다음 <보기>에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멍줄 1개 이상
- ㉡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부환
- ㉢ 최대승선인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조끼. 이 중 1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 최대승선인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멍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 ㉥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9번 해설] ①

㉠㉡㉢ [O]

㉣ [X] 110퍼센트 이상 → 12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 →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

㉤ [X] 11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상

㉥ [X] 휴대식 소화기 → 간이식 소화기

20. 다음 <보기>에서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항해등 ㉡ 라디오 ㉢ 나침반 ㉣ 소화기 ㉤ 레이더 ㉥ 구명튜브
㉦ 자기점화등 ㉧ 위성항법장치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20번 해설] ②

㉠㉢㉣㉤㉥㉦ [O]

㉡㉧ [X]